



제429회국회(임시회)
제8차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호의무자, 동의입원과 보호입원 폐지〉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293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3
1. 보호의무자 폐지 등	3
2. 동의입원등과 보호입원등 폐지 및 행정입원등으로의 변경	15
3.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51
4.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정신건강심사위원회	63
5. 부칙	76

I. 개요

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29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9. 25.
- (3) 회 부 일 : 2025. 9.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이 가능함. 2024년 기준, 전체 비자의입원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74%에 달함. 그러나 다수의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는 입원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어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정신질환자는 입원과정에서 생긴 트라우마로 인해 재입원이나 제대로 된 치료가 어려워지고, 보호의무자는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이들 모두 보호의무제도 폐지 및 정신질환국가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정신질환자 본인의 신청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이 결정되는 ‘동의입원’은 당사자 의사 존중이라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퇴원 시에도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전환되는 등 사실상 강제입원의 연장으로 악용되고 있음.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처럼 사법입원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판사 한 명이 맡는 재판의 수가 다른 나라보다 2~5배 높아 사법입원 심사가 자칫 형식적 심사로 이어질 수 있어 현행 입원제도의 대안이 되기는 어려움.

이에 보호의무자의 보호의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동의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및 입원적합성심사 등의 제도를 보완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39조·제40조·제42조·제43조 삭제 및 제44조, 제45조, 제48조 등).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이 퇴원 및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및 이용 절차 등을 알리고,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신보건수첩 등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릴 권리의 종류·내용, 고지방법 및 서류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③ (생략)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 ⑨ (생략)

제39조(보호의무자) ① 「민법」에

② -----

-----후견인
등-----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후견인등-----

-----.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후견인등-----
-----.

⑤ ~ ⑨ (생략)

<삭 제>

다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
니한 사람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
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
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
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사
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
· 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는 「민법」 제976조에 따른다.

제40조(보호의무자의 의무) ① 보호
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
환자가 적절한 치료 및 요양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삭 제>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
등”이라 한다)에 입원등을 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정신질환자
의 퇴원등이 가능하다고 진단할
경우에는 퇴원등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

③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
람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
여야 하며, 정신질환자의 재산상
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신상정보의 확인) ① 정신건
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건강증진
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보
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
하여야 하며, 신상정보가 확인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상정보의

제51조(신상정보의 확인) ① -----

-----후견인

등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55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①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제76조에 따른 작업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5조(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무단으로 퇴원등을 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탐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였던 사람의 성명·주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5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① -----
-----후견인등-----

-----.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후견인등-----

⑧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제7항에 따라 고지받은 퇴원등의 사실 통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없다. 다만, 정

⑧ -----

⑨ (현행과 같음)

제69조(권익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후견
인등 _____

_____.

③ (현행과 같음)

제73조(특수치료의 제한) ① -----

----- 후견인등
에 게-----

-----.

후견인등의-----.

② (현행과 같음)

제79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

후견인등

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벌칙) ----- ----- -----.
1.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	<삭 제>
2.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9항 또는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등을 시키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2항----- ----- -----
3. 제43조제7항을 위반하여 퇴원등의 명령 또는 임시 퇴원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삭 제>
4. ~ 11. (생략)	4. ~ 11. (현행과 같음)
12.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체의 결정 없이 특수치료를 하거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또는 <u>보호의무자</u> 의 동의 없이 특수치료를 한 자	12. ----- ----- ----- ----- <u>후견인등</u> ----- -----

□ 현행 제39조에 따르면, 「민법」에 따른 후견인¹⁾ 또는 부양의무자²⁾

1)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민법」 제928조)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민법」 제9조)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써, 후견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함(「민법」 제940조의6).

「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①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되는데 개정안은 제39조를 삭제하고, 안 제6조는 ‘정신질환자등의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후견인등’으로 약칭하고 삭제한 ‘보호의무자’를 ‘후견인등’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현행 제39조가 삭제됨에 따라 같은 조 제3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의무자의 결격사유가 모두 삭제되면 후견인은 「민법」 제937조에 따른 후견인의 결격사유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 결격사유는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와 차이³⁾가 있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결격사유는 후속조치 없이 삭제됨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보호의무자의 결격사유와 「민법」에 따른 후견인의 결격사유 비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제39조(보호의무자)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2)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3) 예컨대 현행법 제39조의 삭제에 따라 동 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도 함께 삭제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6. 그 밖에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u>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② (생 략)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u>”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2.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호의무자로 의무를 이행하기가 힘들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현행법과 개정안에서의 후견인과 보호의무자 결격사유 근거 비교 >

	현행 결격사유	개정 이후 결격사유
후견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각 호 적용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각 호 적용
부양의무자		없음

□ 안 제40조는 안 제39조 보호의무자를 삭제함에 따른 귀결로서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삭제하려는 것인데, 이에 따라 현행법 제40조 제4항4)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의무자가 해당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84조제1호5)도 삭제되게 됨.

□ 현행법 제40조6)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및 영양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 정신의료기관등에의 입원등과 퇴원등에 관한 의무, 보호하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보호의무자의 의무)

④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보호의무자의 의무) ①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및 영양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정신질환자의 퇴원등이 가능하다고 진단할 경우에는 퇴원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하고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지 않을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는데,

안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라는 용어 및 안 제43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을 삭제하더라도, 그 밖의 조문에서는 보호의무자 대신에 후견인등을 사용하여 조문을 유지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안 제40조 또한 현행 구조를 유지하면서 보호의무자를 후견인등으로 수정하여 후견인등의 의무 사항을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⁷⁾.

7) 다만, 예컨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舊 정신보건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보호의무자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을 고려할 때, 후견인등의 의무 사항을 존치하면, 보호 의무가 유지되는 반면, 개정안과 같이 삭제하는 경우에는 후견인등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의 법리는 차치하더라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의무 위반 사항은 없어지게 됨.

【판시사항】

- [1]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인 부양의무자 등이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률상 감독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부양의무자 등이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에 관한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2]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인 갑이 아파트 방에서 불을 질렀다가 갑의 아버지인 을이 불을 끄는데, 약 4시간 후 갑이 방 안에서 다시 불을 질러 인접 호수의 아파트로 불이 옮겨붙어 병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을에게는 갑이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였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아 갑의 행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므로, 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2. 동의입원등과 보호입원등 폐지 및 행정입원등으로의 변경

☐ 개정안은 동의입원등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을 삭제하고, 후견인등이 자신이 보호하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그와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및 제43조 삭제, 안 제44조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1.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43조제7항·제9항 본문, 제47조제4항 또는 제6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1. 제41조제2항----- ----- ----- -----

퇴원이나 임시 퇴원을 시키지 아니한 행위 2. (생 략) ③ (생 략)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정신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생 략) 2. <u>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본 문, 제43조제7항·제9항 본문,</u> 제47조제4항 또는 제6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이나 임시 퇴원을 시키지 아니한 경우 3. ~ 5. (생 략) ⑤ ~ ⑦ (생 략) 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 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할	-----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41조제2항</u>----- ----- ----- ----- 3. ~ 5.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수 없다.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43조제7항·제9항 본문,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소나 임시 퇴소를 시키지 아니한 행위

2. (생략)

④ ~ ⑦ (생략)

제25조(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요양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2. (생략)

3.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43조제7항·제9항 본문,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소 또는 임시 퇴소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4. ~ 6. (생략)

② ~ ⑤ (생략)

제30조(기록보존)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
-----.

1. 제41조제2항-----

2.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5조(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① -----

-----.

1.·2. (현행과 같음)

3. 제41조제2항-----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기록보존) ① -----

등에 작성·보존하여야한다.

1. (생략)

2.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른 퇴원등의 의사 확인

3. 제42조제2항에 따른 퇴원등의
신청 일시 및 퇴원등의 거부 사
유

4. 제43조제6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청구 및
결과

5. ~ 10. (생략)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등을 한 사람
의 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사본
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한다. 다만, 입
원등을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의
사능력이 미흡하여 보호의무자가
입원등을한 사람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로 그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제3
항에도 불구하고 입원등을 한 사
람에게 해가 되는 경우로서 대통

-----.

1. (현행과 같음)

2. 제41조제3항-----

<삭 제>

<삭 제>

5. ~ 10. (현행과 같음)

③ -----

후견인등이-----

-----후견인등임을-----

-----후견인등이-----

④ -----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자의입원등) ①·② (생략)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42조(동의입원등) ① 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후견인등-----
-----.

제41조(자의입원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개월-----
-----.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언제든지 퇴원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구두, 서면, 전자우편 그 밖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삭 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고, 퇴원등을 거부하는 기간 동안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 사유 및 제55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

<삭 제>

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
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
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
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
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정신건강
의학과전문의의 입원등 필요성에
관한 진단은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각각에 관한 진단을 적
은 입원등 권고서를 제1항에 따
른 입원등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
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
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
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2.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어 입
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진단 결과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3개월 이내

2. 제1호에 따른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등 기간 연장:
매 입원등 기간 연장 시마다 6
개월 이내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 제5항 각 호에 따른 입원등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이 경
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등 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연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
학과전문의(제21조 또는 제22조
에 따른 국립·공립의 정신의료
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
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가 입
원등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일치된 진단을
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신청 보호의무자”라 한다) 2명
이상(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

시 신청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었
던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제5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 연
장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
우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
사 청구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제59조(제61조제
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
다)에 따라 퇴원등 또는 임시 퇴
원등(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킨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입
원등 여부를 결정하는 조치를 말
한다. 이하 같다) 명령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
를 지체 없이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이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
정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
원등의 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
는 지체 없이 입원등을 한 사람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⑨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입원등을 한 사람이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⑩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9항 본문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퇴원등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9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과 퇴원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실 및 사유와 제55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4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은 해당 지역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달리 정하여 진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등)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
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
자의 후견인등 또는 정신질환자
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

②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급대원(「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입원 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정신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을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경우

2.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

-----입원등을-----
-----후견인등-----

-----입원등의-----
-----.

⑥ -----
-----입원등을 시킨-----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진단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입원 의뢰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제55조에 따라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

⑦ -----

-----입원등을 할-----

-----입원등을-----.

⑧ -----

-----입원등의-----

-----후견인-----
-----등-----
-----입원등이-----

-----.

⑨ -----

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이하 “구급대원”이라 한다)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⑩ (생 략)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입원등

구급대원

⑩ 제4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1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제50조(응급입원) ① -----

-----제41조 또는 제44조-----

-----.

② ~ ⑤ (생 략)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 ⑧ (생략)

제52조(퇴원등의 사실의 통보)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또는 제50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관할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을 할 사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본인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 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기 전에 미

⑥ 후견인등

⑥ ~ ⑧ (현행과 같음)

[illegible]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리 그 사실을 본인 또는 <u>보호의무자</u>(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을 할 사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본인 또는 <u>보호의무자</u>가 제3항에 따라 고지받은 퇴원등의 사실 통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략) ⑥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해당 퇴원등을 할 사람 또는 <u>보호의무자와</u> 상담하여 그 사람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0조(재심사의 청구 등) ① <u>제43조제6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u>,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한 사람,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u>후견인등</u>----- ----- ----- ----- ----- -----. ④ ----- -----<u>후견인등이</u>----- ----- ----- -----.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u>후견인등과</u>----- ----- -----. 제60조(재심사의 청구 등) ① <u>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한 사람</u>----- ----- ----- ----- ----- -----<u>후견인등은</u>-----
--	---

연장 결정을 받은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62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은 제44조제7항에 따라 입원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최초로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하여야 하며, 입원의
해제 사실을 그 정신의료기관의 장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정신질환자를 퇴원
시켜야 한다.

② (생략)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 ① -----

-----정신의료기관의
장,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
구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
심사 청구를 한 사람, 해당 정신
질환자-----
-----.

② (현행과 같음)

③ -----

후견인 등

제63조(임시 퇴원등) ① 제44조

후견인등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① -----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 및 그 보호의무자와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의 장,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및 외래치료 지원을 하게 될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철회하고,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후견인등과-----

-----.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42조에 따라 동의입원등을 신청하게 하는 것 3. 보호의무자에게 제43조제1항에 따른입원등 신청을 요청하는 것 4. 제44조제7항에 따라 입원하게 하는 것(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⑧ ~ ⑩ (생략)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 2.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9항 또는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등을 시키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7항을 위반하여 퇴원등의 명령 또는 임시 퇴원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 11. (생략)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4. ----- -----제1호----- ----- -----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84조(벌칙) ----- ----- ----- -----. <삭 제> 2. 제41조제2항----- ----- ----- <삭 제> 4. ~ 11. (현행과 같음)
--	---

12.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체의 결정 없이 특수치료를 하거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특수치료를 한 자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의4. (생략)

2. 제41조제3항 또는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입원등 신청서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입원등 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청구기간을 지나서 심사 청구를 하거나,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입원등 기간을 연장하여 입원등을 시킨 자

5. ~ 11. (생략)

제8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12. -----

-----후견인등-----

제86조(벌칙) -----

-----.

1. ~ 1의4. (현행과 같음)

2. 제41조제3항-----

<삭 제>

<삭 제>

5. ~ 11. (현행과 같음)

제89조(과태료) ① -----

한다. 1. ~ 3. (생략) 4.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퇴원 등 거부사유 및 퇴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지 아 니한 자 5. 제43조제8항을 위반하여 입원 등 또는 입원등 기간 연장의 사 실 및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6. 제43조제10항을 위반하여 퇴원 등 거부 사실 및 사유나 퇴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절차를 통지하지 아 니한 자 7. ~ 10. (생략) ②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7.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등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의입원등과 동의입원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원되는 보호
입원등과 행정입원으로 분류⁸⁾할 수 있음.

8) 제50조에서 응급입원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응급상황이 아닌 일반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의 종류는
통상 4종류로 분류함.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의 종류 및 주요 특징 10)>

구 분		자의입원		비자의입원	
		자의입원 (법 제41조)	동의입원 (법 제42조)	보호입원 (법 제43조)	행정입원 (법 제44조)
입원 요건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로서 ① 입원 치료의 필요성, ② 자·타해 위험성 모두 충족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성 의심되는 자
입원 요건 판단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입원 신청		환자 본인	① 환자 본인 신청 + ② 보호의무자 1명 동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 (단, 1명만 있다면, 1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입원·퇴원 결정권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			
입원시설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 ⁹⁾			
입원 진단 의사	진단 입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치료 입원	-	-	서로 다른 기관 소속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1명 이상 지정 전문의 포함)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입원 연장	환자 의사 확인	환자 의사 확인	서로 다른 기관 소속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1명 이상 지정 전문의 포함)의 일치된 진단 + 보호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

구 분		자의입원		비자의입원	
		자의입원 (법 제41조)	동의입원 (법 제42조)	보호입원 (법 제43조)	행정입원 (법 제44조)
				의무자 2명 이상 의 동의+ 소관 정신건강심사위 원회의 심사	
입원 기간	진단 입원	-	-	2주	2주
	치료 입원	-	-	3개월	3개월
	입원 연장	2개월마다 입원연장 여부 확인		3개월 이후 1차 연장: 3개월, 이후 6개월씩 연장	
입원 심사 기관	최초 입원	-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입원 연장	-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퇴원 청구				
퇴원 방식		환자 신청 시 지체 없이 퇴원	환자 신청 시 지체 없이 퇴원 (단, 보호의무자 퇴원 미동의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치 료 보호 필요성 이 있는 경우 72시간 퇴원 거 부 및 보호·행정 입원 전환 가능)	환자 또는 보호 의무자의 퇴원 신청시 지체 없 이 퇴원 (단, 입원요건 모두에 해당하 는 환자에 대해 퇴원 거부 가능)	시장·군수·구청 장의 입원해제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재구성

9)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는 입원과 퇴원이 아니라 입소와 퇴소로 표현함.

10) 자의입원등, 동의입원등, 보호입원등에는 ‘등’이 포함되고 행정입원에는 ‘등’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현행법에서 ‘입원등’은 입원과 입소를 말하는데, 입소는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 해당하는 용어이고, 행정입원은 정신의료기관에의 입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이념)

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가 최소화되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자의입원등”이라 한다)가 권장되어야 한다.

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 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 각 입원 종류별 장점과 단점을 보면,

자의입원은 정신질환자의 환자 자의가 반영된 입원으로서 인권적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이라는 장점이 있고, 동의입원은 퇴원 시에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퇴원을 신청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에 따라서 퇴원이 거부되고 비자의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보호입원과 행정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원된다는 단점은 있으나,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의 기회가 제공된다는 장점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입원의 종류별 장점과 단점>

	장점	단점
자의입원	- 환자의 의사가 반영된 입원으로 환자의 치료 경과에 긍정적 영향 및 권익 측면에서 이상적	- 퇴원 시에도 의료적 판단 보다 환자의 결정이 우선 - 장기입원 및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 등에 대한 관리 체계 부재
동의입원		- 환자의 의사로 입원하였으나 퇴원 신청 시 경우에 따라 비자의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어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 유지 개연성 - 장기입원 및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 등에 대한 관리 체계 부재
보호입원	-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치료 기회 제공	- 보호의무자 범위, 입증 방법 등이 복잡하며, (특히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보호의무자 요건 충족의 어려움 존재) - 서류 구비 등으로 인해 치료 지연 및 중단 가능성 - 이송체계 부재 - 보호의무자에게 과중한 책임 부담

	장점	단점
행정입원	- 가족이 없거나 행려, 무연고자 등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 가능	- 절차가 매우 복잡하며 진단·진단/치료 입원 등 과정에서 정신의료기관 및 지자체에 상당 행정 부담 존재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 지자체장에 의한 '진단을 위한 입원' 등 과정에서 이송 주체 불명확 - 치료비 재원 마련 부담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재구성

□ 안 제41조제3항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퇴원등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기를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려는 것인데,

자의입원등은 정신질환자가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퇴원등을 할 수 있으므로¹¹⁾, 해당 주기를 단축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을 것이나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함.

□ 안 제42조는 동의입원등을 폐지하려는 것이고, 안 제43조는 보호입원등을 폐지하려는 것인데, 2021년부터 2024년 정신의료기관 입원 현황을 보면, 동의입원과 보호입원이 전체 입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47.4%~48.7%에 이르고 있음.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자의입원등) ①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자의입원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021년 ~ 2024년 정신의료기관 입원 종류별 현황 >

(단위: 명)

연도	합계	자의입원		비자의입원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2021	58,414	25,689	12,426	16,026	4,273
2022	55,864	24,396	11,775	15,210	4,483
2023	55,671	23,646	11,713	15,273	5,039
2024	55,443	23,754	11,486	14,810	5,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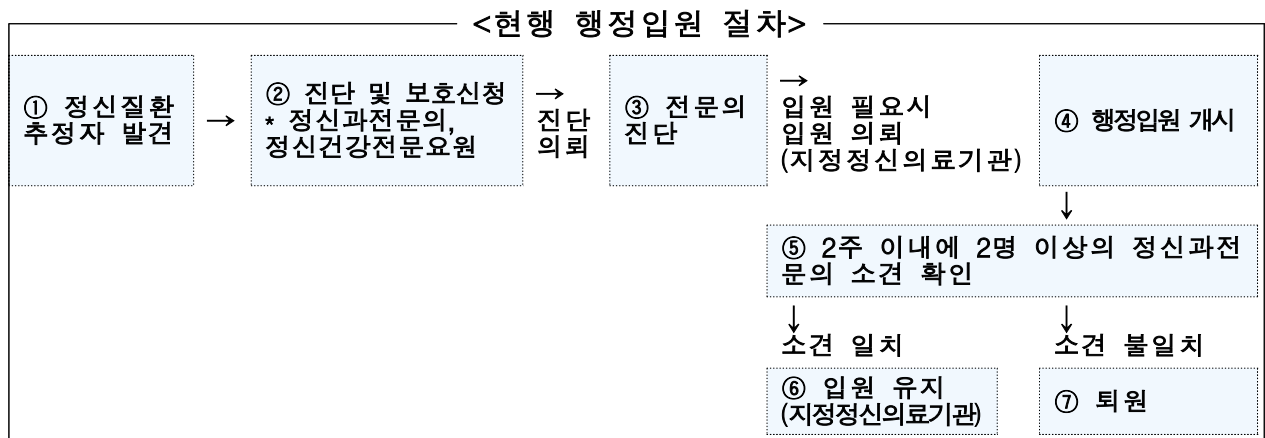
* 자료: 보건복지부(매년 하반기 정신의료기관 현황 조사자료(매년 12. 31.시점 기준, 시·도 제출 및 취합)

□ 동의입원의 폐지는 ‘당사자 의사 존중’이라는 동의입원 도입 취지 달리 퇴원시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보장받지 못하고, 강제 입원 요건과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보호입원의 폐지는 경찰이나 구급대원이 관여해 정신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행정입원과 달리 사설 응급차량을 이용해 강제로 병원까지 이송되는 환자의 사례가 많아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기본권 침해 우려가 가장 높고, 보호의무자에게 사실상 입·퇴원의 결정권을 부여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간 큰 갈등이 벌어지고 치료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 입법배경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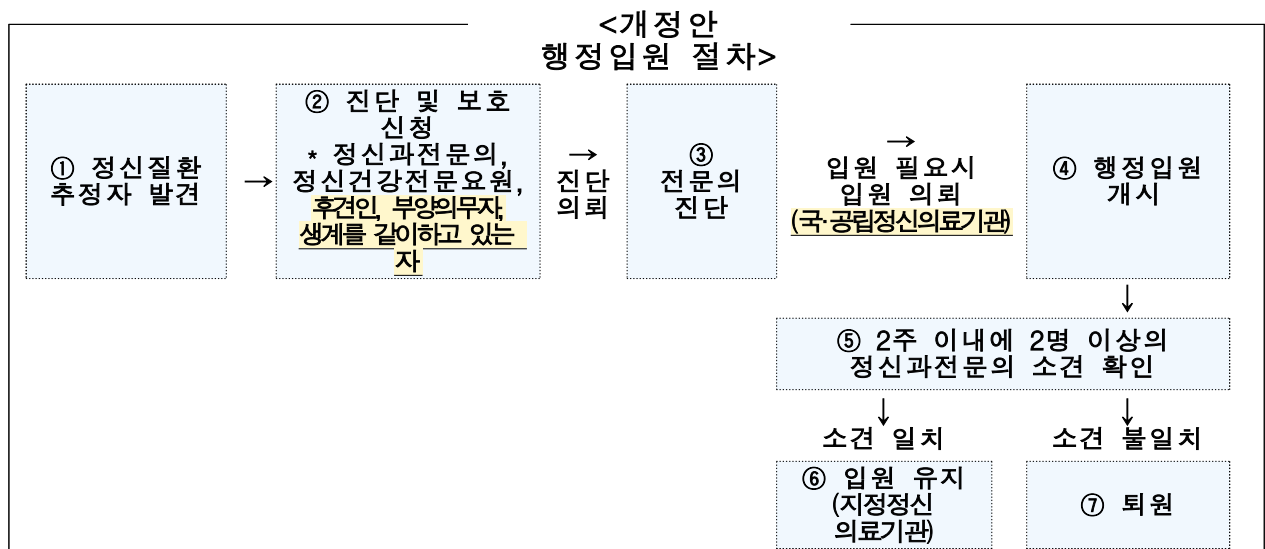
□ 안 제44조는 동의입원등과 보호입원등을 폐지함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비자의적으로 입원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행정입원등의 절차로 편입시키려는 것임.

행정입원은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진단 및 보호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토록 하는 것으로,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입원을 최대 2주간 시킬 수 있고, ‘정신의학과전문의 2명(소속 여부 불문)’의 계속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간 치료를 위한 입원을 하게 할 수 있음.



- 다만, 안 제44조제1항은 행정입원 신청권자(진단·보호 신청권자)를 현행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정신건강전문요원’ 외에 ‘정신질환자의 후견인등 또는 정신질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려는 것인데,
- 안 제44조제1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행정입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현행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

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와 비교할 때, 추가하려는 ‘정신질환자의 후견인등 또는 정신질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보호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이나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이고,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는 성격이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44조제4항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2주간 입원하게 할 수 있는 병원을 현행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으로 수정하고, 진단을 위한 입원의 요건으로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다만, 안 제44조제4항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지를 진단하기 위하여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 2주간 입원하는 것이므로, 안 제44조제5항과 같은 조 제6항의 ‘입원등’은 현행과 같이 ‘입원’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진단 결과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로 결론이 나는 경우에 대한 자구의 수정이 필요함¹²⁾.

한편, 안 제44조제4항은 지정정신의료기관을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으로 대체하려는 것인데, 최근 4년간 연간 평균 동의입원과 보호입원 현황이 26,000~28,000명이어서 이들이 행정입원으로 편입될 때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¹³⁾.

참고로 2024년 12월말 기준 지정정신의료기관은 269개소인데 반해, 국립 정신의료기관 10개소 및 공립의료기관은 56개소로서 행정입원등을 수행할 병원은 개소 수 기준으로는 훨씬 줄어들게 됨.

12) 현행 및 개정안은 제44조제7항에서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정신요양시설이 제외되어 있음. 다만,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없던 정신요양시설의 행정입소를 새로운 유형으로 신설하는 것은 비자의 입소를 폐지하려는 기존 정책의 방향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3) 또한,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정정신의료기관 현황>

(2024.12월 말 기준, 단위: 개소)

계	공공의료기관						민간 정신의료 기관
	계	국립 정신병원	국립대 병원	지방 의료원	시도립 정신병원	기타 ¹⁴⁾	
269	29	5	7	7	9	1	240

* 자료: 보건복지부

<시·도별 국립 정신의료기관 현황>

(2024.12월 말 기준, 단위: 개소)

연번	시·도	기관명	기관구분
1	서울	국립재활원	병원
2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병원
3	서울	경찰병원	종합병원
4	경기	국립교통재활병원	병원
5	강원	국립춘천병원	정신병원
6	충남	국립공주병원	정신병원
7	충남	국립법무병원	정신병원
8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종합병원
9	전남	국립나주병원	정신병원
10	경남	국립부곡병원	정신병원

* 자료: 보건복지부

14)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1곳임.

<시·도별 공립 정신의료기관 현황>

(2024.12월 말 기준, 단위: 개소)

연번	시도	기관명	기관구분
1	서울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종합병원
2	서울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종합병원
3	서울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종합병원
4	서울	푸르메재단넥슨어린이재활병원	요양병원
5	서울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병원
6	서울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정신병원
7	서울	서울대학교병원	종합병원
8	서울	서울적십자병원	종합병원
9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종합병원
10	서울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병원
11	부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종합병원
12	부산	부산시립정신병원	정신병원
13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종합병원
14	부산	부산광역시의료원	종합병원
15	대구	대구정신병원	정신병원
16	대구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종합병원
17	대구	대구의료원	종합병원
18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종합병원
19	광주	광주보훈병원	종합병원
20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종합병원
21	대전	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종합병원
22	대전	대전광역시온마음병원	정신병원
23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종합병원
24	경기	고양정신병원	정신병원
25	경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종합병원
26	경기	국립암센터	종합병원
27	경기	축령정신병원	정신병원
28	경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종합병원
29	경기	성남시의료원	종합병원
30	경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종합병원
31	경기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종합병원
32	경기	경기도립정신병원	정신병원
33	경기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정신병원
34	경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종합병원
35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의료원	종합병원
36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료원	종합병원
37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종합병원

연번	시도	기관명	기관구분
38	강원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종합병원
39	충북	단양군보건의료원	병원
40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종합병원
41	충북	충청북도청주의료원	종합병원
42	충남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종합병원
43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종합병원
44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마음사랑병원	정신병원
45	전남	목포시의료원	종합병원
46	전남	전라남도순천의료원	종합병원
47	전남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종합병원
48	전남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종합병원
49	경북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종합병원
50	경북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종합병원
51	경남	경남도립정신병원	정신병원
52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종합병원
53	경남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종합병원
54	경남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종합병원
55	제주	서귀포의료원	종합병원
56	제주	제주의료원	병원

* 자료: 보건복지부

□ 현행법 제44조제7항에 따르면, 치료 목적의 입원이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정신의료기관¹⁵⁾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44조제4항에서는 지정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약칭을 삭제하고 있으나, 동의입원과 보호입원의 폐지로 인하여 폭증할 행정입원등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정정신의료기관 제도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진단 이후 치료를 위해 입원할 정신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이송의 주체·비용·환자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15) 지정정신의료기관은 개정안에서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으로 개정되므로 이를 반영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개정안은 동의입원제와 보호입원제를 폐지하면서 그 대안으로 행정입원제로 전환하고 있으나, 사법입원제를 대안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음.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원 행위에 대하여 제3자인 법원이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당한 수준의 법관 확보가 필요하고 법관 또한 정신의학적 판단에 있어서는 별도의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음.

<사법입원제 개요>

○ 해외사례

항목	미국	독일	프랑스
근거법률	각 주의 정신보건법	민법 및 각 주의 정신환자법	공중위생법
비자의입원 대상자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 (각 주마다 다름)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 (각 주마다 다름)	정신과 치료의 대상이 되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입원요건	위험성 또는 중대한 장애(치료필요성)	1. (민법상입원) 후견인의 복리* *자해위험 및 판단능력 손상 2. (공법상입원) 공공 안전 위험(타해위험)	1. (제3자청구입원) 환자의 동의능력 상실에 따른 치료필요성 2. (국가대리인 결정에 의한 입원) 공공 안전 위험(타해위험)
심사기관	각 지역 판사 (치안판사, 후견판사)	구 법원 후견판사	각 지역 인신보호판사
심사방식	병원출장 대면심사 위주		법정심사 (화상심사 6%)
불복방식	상급심 법원에 불복		
비자의입원 유형 (응급입원제 외)	• 주마다 다양 • 응급입원 후 심사를 거쳐 전환	1. 민법상입원(후견인에 의한 입원) 2. 공법상입원(행정기관에 의한 입원)	1. 제3자(가족 등) 청구에 의한 입원 2. 도지사 등 국가대리인의 결정에 의한 입원

*출처: 신권철 등,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제도 개선과 가정법원의 역할,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원행정처, 2016.

○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 입원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제도로 법원의 판사가 환자를 대면하여 재판 절차에 따라 입·퇴원 여부를 결정

* 현행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기능 대체 - 기존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국립정신병원 설치), 정신건강심사위원회(지방자치단체 설치)에서 수행하는 최초 입원

심사 및 계속입원심사 등을 법원이 심사)

- (절차) 청원권자(가족, 정신의료기관장, 동료 등)가 법원에 청원 등을 제기하면 법원이 수일 내 입원 심사 개시·결정
- (평가) 공공책임 강화하나, 사법인력 부족으로 형식화 우려
 - (찬성) ①국가책임 제고, ②법관에 의한 결정 → 환자 수용성 제고(Black robe effect), ③가족부담 완화 등
 - (반대) ①사법인력 부족으로 현실성 無(준 사법제도인 심판원 제도 검토 가능), ②형식적 심리위험, ③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④편견 심화 등

* 자료: 보건복지부

□ 안 제44조제10항은 진단 입원의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입원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하고, 1개월 이내의 기간 진단 입원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 제4항¹⁶⁾에서 진단 입원의 경우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충돌되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지체 없이 그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는 취지와도 배치되는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등)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3.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 개정안은 ①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단축하고(3일→1일), ②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동료지원인 등을 신설하며, ③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입원적합 여부 통보 기간을 단축(1개월 이내→14일 이내)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현행	개정안
제45조(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①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시킨 즉시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입원등의 사유 및 제46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알리고, 입원등을 한 사람의 대면조사 신청 의사를 구두 및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45조(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① 제44조----- ----- ----- ----- ----- ----- ----- ----- ----- ----- -----.
② 제1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46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등을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	② ----- -----24시간----- ----- -----

적사항, 입원등 일자, 진단명, 입
원등 필요성, 대면조사 신청 여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
치 및 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
관은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
하여 제21조에 따른 각 국립정신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관(이하 “국립정신병원등”이라 한
다) 안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각 국립정신병원등의
심사대상 관할 지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②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입원
심사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위원
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장은 각 국립정신병원등의 장으
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
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
여야 한다.

-----.

제46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
치 및 운영 등) ① -----
-----제44조-----

-----.

② -----
-----제44
조-----

-----.

③ -----

-----.

1. ~ 4. (생략)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나. (생략) 다. <u>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u> 라. <u>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u> <신설> <신설> <신설> ④ 입원심사소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후단 신설> ⑤ ~ ⑧ (생략) 제47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	1. ~ 4. (현행과 같음) 5. ----- ----- ----- ----- 가.·나. (현행과 같음) <삭제> 라. <u>정신건강 관계 공무원</u> 6. 동료지원인 7. <u>인권전문가 등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u> 8. <u>정신질환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u> ④ ----- ----- ----- -----. <u>이 경우 제3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u>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47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
---	--

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①·②
(생 략)

③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입원등의 부적합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입원등을 한 사람을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신 설>

⑤ (생 략)

제48조(입원적합성의 조사) 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입원심사소위

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4일 이내에 지정정신의료기관
의 장 및 입원등을 한 사람---

-----.
-----.

④ 지정정신의료기관-----

-----.

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입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을 때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입원심사소위원회에서 제38조의2에 따른 절차조력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8조(입원적합성의 조사) ① ---

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입원등을 한 사람이 대면조사를 신청하거나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국립정신병원등의 소속 직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에게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을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을 직접 면담하고 입원등의 적합성, 퇴원등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 및 정신의료기관등의 종사자와의 면담
 2.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의 진료기록 및 입원등의 기록의 제출
 3. 정신의료기관등에의 출입 및 현장확인
 4. (생략)
- <신설>

-----지정
정신의료기관-----

-----하여야 한다.

② -----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정신의료기관-----

-----.

1.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지정정신의료기관의-----

2. 지정정신의료기관-----

3. 지정정신의료기관-----

4. (현행과 같음)

③ 입원등을 한 사람이 제2항제1호에 따른 면담을 할 때에는 제3

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 <u>정신의료기관등</u>에의 출입, 면담 등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입원등의 심사에서 심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입원등을 하고 있는 <u>정신의료기관등</u>에 소속된 위원은 제척(除斥)된다.	<u>8조의2에 따른 절차조력인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u>지정정신의료기관</u>----- ----- ----- -----. 제49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 ----- ----- ----- ----- -----<u>지정정신의료기관</u>----- -----.
---	---

□ 입원적합성심사제도는 비자의입원등¹⁷⁾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정신질환자등에 대하여 입원등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1개월 이내에 입원등의 적합·부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것임.

17) 현행법 기준 보호입원·보호입소 및 행정입원을 말함

<입원적합성심사 절차>

① 정신질환자등 입원등 이후 3일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비자의 입원 신고**(정신의료기관등의 장) → ② **조사원 조사 실시**(대면신청 또는 위원장의 직권) → ③ **입원심사소위원회 회부**(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 → ④ **입원적합성심사소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 ⑤ 1개월 이내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결과 통지**(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¹⁸⁾는 비자의 최초입원에 대한 적합성 심사위원회로, 현재 전국 5개의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되어 각 관할 지역의 입원적합성심사를 맡고 있으며, 실제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각 병원별로 최소 3개에서 최대 20개의 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 병원>

(2025. 10. 17. 기준)

설치기관	관할 지역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국립나주병원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국립부곡병원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국립춘천병원	강원도
국립공주병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자료: 보건복지부

18) 현행법 제46조제1항에서는 국립정신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대상 관할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5조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들의 입원등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기간의 단축(입원등을 한 날로부터 3일→24시간 이내)하려는 것인데,
- 신고 기간의 단축을 통하여 신고가 조속히 이루어지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판단도 신속히 나올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해당 신고는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의 진단결과서를 작성해야만 신고 완료가 가능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진단을 기록하는 행위와 별도의 작업이어서 입원등 이후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도록 하는 것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 진단결과서에는 정신질환자들의 특성상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의견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24시간 이내에 정보를 알아내기 힘든 경우가 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안 제46조제3항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을 제외하고 동료지원인과 정신질환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인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구성 비교>

현행	개정안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현행과 같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현행과 같음)
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현행과 같음)
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현행과 같음)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운영자	(현행과 같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현행과 같음)
다. <u>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u>	(삭 제)
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 신 설 >	6. <u>동료지원인</u>
< 신 설 >	7. 인권전문가 등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신 설 >	8. <u>정신질환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u>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각 국립정신병원등의 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동료지원인과 정신질환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원이 되면, 정신질환자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동료지원인¹⁹⁾은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이었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하는데, 개정안은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을 삭제하고 동료지원인을 신설하는 것이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으로의 진입을 오히려 까다롭게 하는 측면은 있음.

□ 안 제46조제4항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입원심사소위원회에 제4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제6호에 따른 동료지원인을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시키려는 것인데, 입원심사소위원회 위원이 총 5명인 경우에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는 위원이 2명이 되는 것으로서 위원의 임명권을 갖고 있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임명권의 폭을 줄이게 되고, 심사를 받는 대상자에 따라서는 비전문가의 심사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⁰⁾.

참고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있는 5개 병원의 소위원회 현황을 보면, 소위원회는 최소 3개에서 20개이고, 월 평균 심사 건수는 60건에서 1,242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6. 1. 3.] [법률 제1990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동료지원인”이란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이었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20)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소위원회 구성 최소인원을 현행 5명 이상보다 높게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병원별 소위원회 설치 현황>

(2025. 10. 17. 기준)

	소위원회 수(개)	개최 건수(회)	월평균 심사 건수(건)
국립정신건강센터	20	381	1,242
국립공주병원	12	66	300
국립나주병원	8	91	728
국립부곡병원	16	152	60
국립춘천병원	3	27	199

* 자료: 보건복지부

□ 안 제47조제3항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입원 적합 여부 통지 기간을 1개월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단축시키려는 것이고, 안 제 48조제1항은 입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입원등을 한 사람이 대면조사를 신청하거나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대면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인데,

정신질환자의 권익 강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입원 적합 여부 통지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는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켜야 하고, 입원적합성 대면조사 의무화 또한 서면조사에 비하여 조사 인력의 충원을 요하는 등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활동과 조직 규모의 강화를 필요로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최근 3개년간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입원적합성 조사 현황을 보면, 연간 심사 건수는 30,000건을 상회하고, 이 중에서 대면조사의 비율은 40% 정도인 것으로 파악됨.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입원적합성 조사 현황>

(2025.10.17. 기준, 단위: 건)

연도	심사 건수	서면 조사	대면조사		
			총계 (%)	신청	직권
2023	31,459	18,449	13,010 (41.4)	9,639	3,371
2024	30,458	17,022	13,436 (44.1)	9,901	3,535
2025	23,827	13,683	10,144 (42.6)	8,223	1,921

* 자료: 보건복지부

4.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정신건강심사위원회

☐ 개정안은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및 심사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안 제54조).

현행	개정안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이 없는 시·군·구에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 ----- ----- ----- ----- ----- ----- ----- <u><단서 삭제></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1. 제43조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 1의2. ~ 4. (생략) <u><신설></u>	③ ----- ----- ----- <u><삭제></u>
5. (생략)	1의2. ~ 4. (현행과 같음)
④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10	5. 심사대상자의 퇴원계획 및 퇴원지원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④ -----15

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
회는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각
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정
신건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
원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야 한다. 다만, 제5호나목부터 라
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광역정신건강심의위
원회에는 3명 이상을, 기초정신건
강심의위원회에는 2명 이상을 포
함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명 이상 20명-----

--10명 이상 15명-----

-. -----

-----.

⑤ -----

-----. <단서 삭제>

1. ~ 4. (현행과 같음)

5. -----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 같은 항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56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제6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내용을 소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신설>

제57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① (생략)

②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심사 대상자 및 심사 대상자가 입원등

③·④ (현행과 같음)

제56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① -----
-----제55조제1항-----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에는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7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할 때에는
그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제1항
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의
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정
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심사 대
상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에게 진
료기록부와 제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59조(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①
제57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심
사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특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은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 또는 제5호의 명
령 또는 결정은 심사 대상자인

-----.

<단서 삭제>

③ -----

-----후견인등-----

-----.

④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제1항
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심사
대상자에게 제38조의2에 따른 절
차조력인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59조(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①

-----.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청구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제41조의 자의입원등 또는 제42조의 동의입원등으로의 전환

6. ~ 8.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청구 또는 동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그 사람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청구 또는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제6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한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 및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결정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 ① 특별자치시장·

-----.

1. ~ 4. (현행과 같음)

5. 제41조의 자의입원등으로의 전환

6. ~ 8. (현행과 같음)

<삭제>

③ (현행과 같음)

④ -----제55

조제1항-----

-----.

-----.

제62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 ①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4조제7항에 따라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최초로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하여야 하며, 입원의 해제 사실을 그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② (생략)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원 기간을 연장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켰을 때에는 그 정신질환자와 <u>보호의무자</u> 또는 그 사람을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 ----- ----- ----- -----정신의료기관의 장,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한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후견인등----- ----- ----- ----- -----.
---	---

□ 현행법 제53조²¹⁾에서는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2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이 없는 시·군·구에는 기초정신건

심사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제54조²²⁾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두 위원회 모두 광역과 기초 위원회로 나뉘어짐.

구분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광역	기초	광역	기초
위원	10~20명	6~12명	5~9명	
임기	2년	2년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 중)	
연임	가능	가능		
심의 또는 심사 내용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제60조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	·(보호입원등) 입원등 기 간 연장 ·-(고지받은 퇴원등의 사실통보 거부 시) 퇴 원등의 사실통보 여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의 심사 청구 ·(행정입원 해제) 입원 기간 연장 ·외래치료지원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업무 중 심사와 관련 된 업무 전문 수행	

* 자료: 보건복지부

강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2. 제60조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개정 2019. 4. 23.>

1. 제43조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
- 1의2. 제52조제4항 및 제66조제8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2.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
3. 제62조제2항에 따른 입원 기간 연장의 심사
4.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두고,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둔다.

□ 안 제53조는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요건을 개정하면서 정신의료기관등이 없는 시·군·구에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정신건강심의위원회 현행과 개정안 주요 사항 비교>

정신건강 심의위원회	현행	개정안
광역 정신건강 심의위원회 (제53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심의사항) ①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②제60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사건, ③지역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보건복지부령)	
	(설치) 시·도지사 소속	
	(인원)10명 ~20명 (임기) 2년, 연임가능 (위원) 다음 각 호 1명 이상 포함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판사·검사·변호사 3. 정신건강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 가족 5. 다음의 해당자 가.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 운영자 나. 대학 전임강사 이상(심리학 등) 다. 정신질환 치료·회복한 사람 라.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인원)15명 ~20명 (임기) 2년, 연임가능 (위원) 다음 각 호 1명 이상 포함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판사·검사·변호사 3. 정신건강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 가족 5. 다음의 해당자 가.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 운영자 나. 대학 전임강사 이상(심리학 등) 다. (삭제) 라.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6. 정신질환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사람 7. 정신건강 관련 인권전문가 8. 정신질환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만 다음에 해당자 3명 이상 포함 i 대학 전임강사 이상(심리학 등) · ii)정신질환 치료·회복한 자 · iii)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 정신건강과 인권전문가에 해당하는 사람	<삭제>

정신건강 심의위원회	현행	개정안
기초 정신건강 심의위원회 (제5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심의사항) ①보호입원(입소) 연장 청구 ②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③퇴원 또는 처우개선 의 심사, ④ 행정입원 연장 심사 ④외래치료명령 심사, ⑤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보건복지부령) <신 설>	(심의사항) 보호입원(입소) 연장 청구 삭 제 외 현행과 동일 심사대상자의 퇴원계획 및 퇴원지원
	(설 치)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두되, 다만, <u>정신의 료기관등이 없는 시·군· 구에는 두지 않을 수 있음.</u>	(설 치)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두도록 함. <예외 규정 삭제>
	(인원) 6명 ~ 12명 (위원) 다음 각 호 1명 이상 포함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판사·검사·변호사 3. 정신건강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 가족 5. 다음의 해당자 가.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 운영자 나. 대학 전임강사 이상(심리학 등) 다. 정신질환 치료·회복한 사람 라.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 전문가 등 <u>다만 다음에 해당자 2명 이상 포함</u> i 대학 전임강사 이상(심리 학 등)·ii)정신질환 치료· 회복한 자·iii)정신건강 관 계 공무원·정신건강과 인권 전문가에 해당하는 사람	(인원) 10명 ~ 15명 (위원) 개정안의 광역 위원과 동일

- 안 제53조제1항의 단서 삭제는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라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고, 각 지역의 정신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심의를 받을 필요

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나, 단서 삭제에 따라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각 시·군·구의 현실적 여건·인력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²³⁾.

안 제53조제3항제5호는 심사대상자의 퇴원계획 및 퇴원지원을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사 사항으로 신설하려는 것인데, 퇴원 이후까지도 지원을 하겠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퇴원계획과 퇴원지원의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음²⁴⁾.

안 제53조제4항에 따라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 인원 수를 현행보다 늘리면서 정신질환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사람·정신건강 관련 인권전문가·정신질환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정신질환자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표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인원 수를 유지하면서도 인적 구성을 다변화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54조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정신질환자의 가족과 정신질환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반드시 위원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으로서 위원 수를 5~9명에서 8~12명으로 늘림으로써 심사의 정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3) 참고로 2022년말 기준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되고 있지 않은 시·군·구는 52곳임.

24) 참고로,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들의 퇴원등 이후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등을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로 하고 있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들이 퇴원 및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및 이용 절차 등을 알리고,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신보건수첩 등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현행과 개정안 주요 사항 비교>

	현행	개정 내용
정신건강 심사위원회 (제54조)	(광역·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둠	
	(인원)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 중 5명~9명 (위원)다음 해당자 중 각각 1명 이상 포함하고(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판사·검사·변호사, 3. 정신건강전문요원) + 다음 해당자 중 3명 이상 포함(1. 대학 전임강사 이상(심리학 등), 2. 정신질환 치료·회복한 자 3.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 전문가 등)	(인원)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 중 8명~12명 (위원)다음 해당자 중 1명 이상 포함 (1. 정신질환자 가족, 2.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한 사람)
	월 1회 이상 개최, 심사 사항이 없는 달은 제외	(현행과 같음)
퇴원등 처우개선 심사 (안 제57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회부받았을 때 지체 없이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추가 신설>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할 때에는 심사 대상자에게 절차조력인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할 경우 심사대상자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의견들어야 함. <u>다만, 처우개선 심사시 그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음.</u>	(후단 삭제)

□ 안 제59조제2항은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으로의 이송 또는 자의입원등으로의 전환 등 명령을 함에 있어서 정신질환자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의 무자의 청구 또는 동의로 당사자의 청구 또는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인데, 후속 조치의 결정에 있어서 당사자가 청구 또는 동의할 수 없는 경우 그 역할을 후견인등이 해야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부칙

-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만을 두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의입원등 및 보호입원등 제도가 폐지되어 행정입원등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확보와 그 밖의 인프라 구축 및 하위 규정 정비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동의입원등 및 보호입원등 폐지는 이 법 시행 이후 입원등을 하는 정신질환자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 규정을 둠으로써 기존 동의입원등이나 보호입원등에 따라 입원이나 입소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²⁵⁾.

25) 기존 동의입원등이나 보호입원등으로 입원이나 입소 중인 사람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들에 대하여 안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등의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 것인지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관련 기관 의견 >

부처 및 기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보호의무자 제도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폐지하고 동의 입원도 폐지하며 비자의 입원은 행정입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정신질환자 입원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준비가 필요함. ○행정입원의 신청권자 확대, 입퇴원 심사 절차 등 현행 비자의입원 및 입퇴원 절차에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함.
대한의사협회	○국가 및 지자체를 통한 행정입원 제도의 미흡한 인프라 및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신질환자 복지 및 인권향상을 위해 자원 및 인프라의 확충 및 책임성 강화가 동반되어야 함. ○지정정신의료기관을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14일 이내에 적합성 여부 통지 등은 의료현장 의견을 반영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에서는 보호의무자의 삭제에 따라 결격사유까지도 삭제되는데, 현재의 결격사유가 부양의무자에 대하여도 계속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립정신건강센터	○비자의 입원을 행정입원으로 일원화할 경우, 치료비 부담 관련 조항의 검토도 필요하고, 자의입원 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판단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이를 갖추지 못한 후견인등은 신청권자로서 제외되어야 하고, 경찰관과 구급대원처럼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다만, 이 경우 후견인등은 행정입원 절차 개시를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요청하는 구조가 되므로 개정안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음) ○국·공립정신의료기관으로 행정입원을 한정하는 것은 국·공립정신의료기관 가용병상 수준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현황 등을 고려하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에서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정의를 명확히 하든지 일괄 삭제가 필요함. ○주소지 외 행정입원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우편 통지 뿐 아니라 전자문서 통지도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24시간 내 입원 신고 이후 전문의 2인의 진단, 입원적합성 조사 및 심사 통지 절차를 14일 내 실현가능한지 등에 모의 실험등 검토가 필요함. ○절차조력 서비스 제공에 대해 이미 안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복신설은 신중한 검토 필요

부처 및 기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대한병원협회	○동의입원, 보호입원을 폐지하고 행정입원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여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적시 치료가 어려워지고 사회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보호입원 및 보호의무자 조항은 존치하고, 보호의무자 의무를 삭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행정입원의 과정 중에 가족이 개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의제기 시 공무집행방해죄처럼 보일 수 있고, 공권력에 의한 강제입원 시 입원에 예민한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고 수용병상 부족이 우려됨.
대한간호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개정안에 따르면, 치료의 필요성은 있으나 자타해 위험성은 현저하지 아니한 경우에 입원 치료가 어렵게 되어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2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 시행은 조사원에 의한 조사를 비롯한 행정 절차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민간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되므로 행정입원을 수용하는 병원을 국·공립정신의료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상 민간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보호의무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가족관계 파탄 및 비자의적 입원 남용 문제 개선 취지에 공감하고, 개정안은 정신질환 국가책임제의 정책 방향에 부합함.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제도의 현실적 한계로 대체 시스템 구축 없이 성급한 동의입원 등 및 보호입원등 폐지는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보호입원 폐지, 사실상 비자의 입원 연장으로 악용되고 있는 동의입원 폐지에 동의하고, 정신질환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속히 신고하고 통보하는 조치에도 동의함.

부처 및 기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서울, 인천, 울산, 광주, 세종, 경기, 충북, 강원, 제주 등	○법령상 보호의무자의 의무 삭제 시, 정신질환자의 방치나 치료 개입 지연과 관리 부재로 이어져 질환이 중증화되고 재입원률이 높아질 수 있음. ○보호입원 폐지 시 전문인력, 공공병상, 24시간 판단 체계 등이 갖춰져야 하나 현재는 그 어떤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일부 사례와 병원에서의 악용 사례를 이유로 전체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이 현실적 대안이고,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완전 삭제하는 것보다는 국가와 가족의 공동 책임이라는 방식이 바람직함.
충북, 세종, 강원, 경기, 제주	○행정입원으로서의 일원화되더라도, 입원 신청의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고, 정신의학적 전문성 부족한 사람들은 사실상 의료적 소견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서울, 대구, 울산, 강원, 광주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의 수가 현행법에 따른 지정정신의료기관 수보다 현저히 적고,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서만 행정입원을 처리할 경우 상당한 업무 부담이 예상됨. ○실제 치료 필요성과 무관한 경우에 대한 행정절차(연장 심사, 보고 등)가 반복되어 행정 처리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
서울	○보호자 연락, 보호입원 또는 행정입원 전환 여부 협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이 이루어지는 데에 개정안과 같은 24시간 이내는 현저히 부족한 시간임.
강원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른 후견인등에게의 정신질환자 퇴원 통보는 향후 돌봄관리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역별 후견인 양성 등 제도의 선행정비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498